

복지대상자 [<input type="checkbox"/> 해산급여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제급여] 지원 신청서							처리기간 4일
신청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급여 대상자와의관계		
	주소 (시설소재지)			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		전자우편		
지급계좌	금융기관명		예금주		계좌번호		
해산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	
	주소 (시설소재지)						
	해산(예정)일	년	월	일	해산원인 해산인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산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산 () 명	
사망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	
	주소 (시설소재지)						
	사망일	년	월	일	사망원인		
통지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(E-mail)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 <input type="checkbox"/> 서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				
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,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
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</div>						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	
구비서류	1. 해산급여 신청자 - 출생신고서 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 - 사산시는 의사·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. 장제급여 신청자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(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 -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(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)						
유의사항	해산·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·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, 출생·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·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						